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강희향 의원)

의안 번호	16-120
----------	--------

발의년월일 : 2016. 11. 23.

발 의 자 : 강희향 · 김영미 · 신종갑
유호렬 · 이봉수 · 이필례
이학래 · 허정행(8명)

1. 제안이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가 마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로 마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관광마포의 이미지 향상 및 마포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해설사 자격 및 직무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설사 선발, 해설사증 발급과 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9조)

라.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
-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해설사 상해 보험료 등
-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면제

- 마. 해설사 배치 시 반영 및 제외 사항(안 제11조)
- 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안 제12조)
- 사.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13조)
-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관광진흥법」 제48조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6. 11. 25. ~ 11. 30.(의견제출 없음)
- 다.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마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② 해설사는 구청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의 파견한 해설사 및 마포구에서 선발·위촉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해설사증에 규격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관광진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58호, 2016.2.3., 일부개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